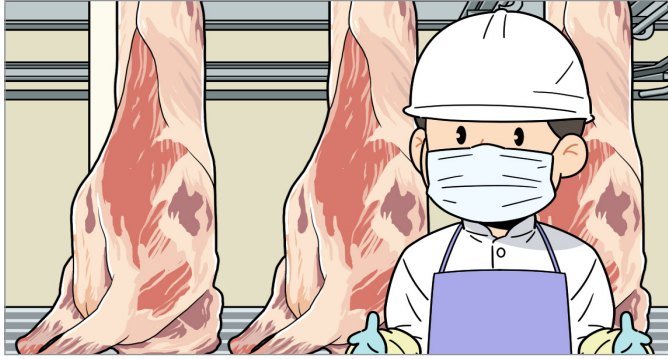


## 03 도축과정에서의 위생관리



-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도살 전에 가축 몸의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.
- 방혈 등 작업시 식육이 벽, 바닥에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작업 칼, 기구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℃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.
-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내장 적출시 장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내장이 파열된 경우에는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식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 처리 대상인 내장과 부산물은 식육과 구분이 되도록 별도 용기에 담아 처리한다.
- 최종 지육 세척시 분변이나 털 등 오염물이 묻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,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세척하여 오염을 방지한다.
-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, 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은 10℃이하로 냉각하고, 닭,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은 심부온도 2℃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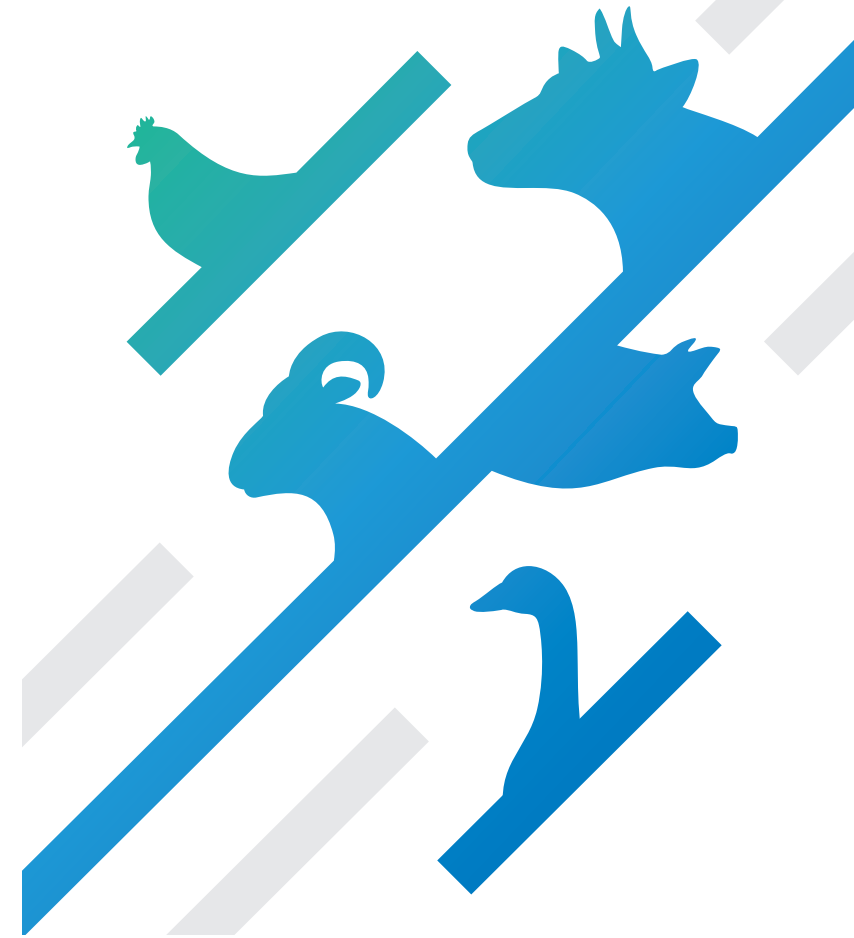
### 도축업 관련자 위생관리 준수사항

영업자 및 종사자



## 도축업 관련자 위생관리 준수사항

영업자 및 종사자



# 01 도축장 시설 및 종사자 위생관리



## 개인위생관리

- 시계, 반지, 목걸이, 귀걸이, 머리핀 등의 장신구가 축산물(식육 등)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영업장내에서는 흡연, 음식물 섭취, 껌 씹기 등을 삼가한다.
- 위생복·위생모·위생화·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.
- 종업원은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년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한다.
- 전염성 질병 감염 또는 외상이 있는 종업원은 축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오염된 기구를 만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한 경우 또는 영업장 및 화장실 출입 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위생복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물 취급을 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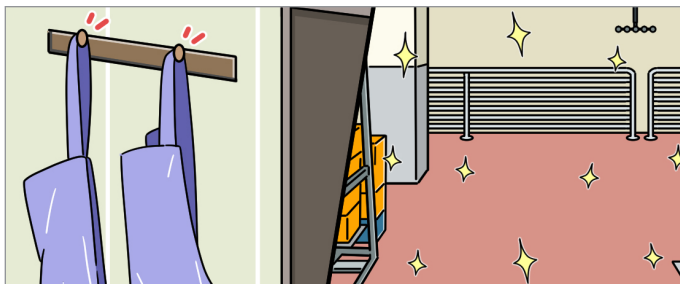


## 작업 전·후 위생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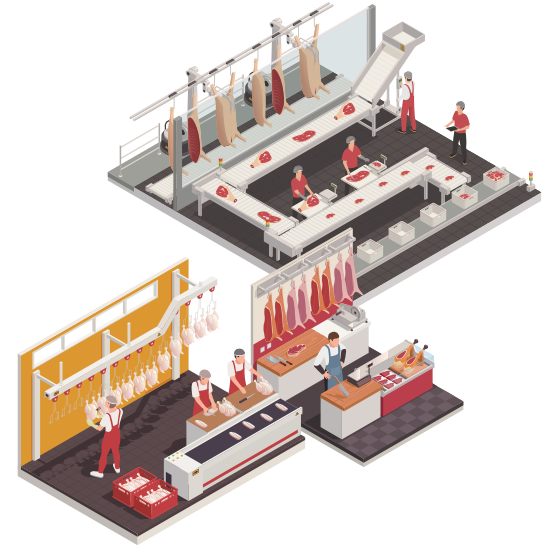
- 영업장의 벽, 천장에는 먼지, 습기,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한다.
- 영업장바닥 및 하수구는 고기찌꺼기 등 이물질 제거하고 청소한다.
- 냉장·냉동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
- 작업대, 절단기구(슬라이스기, 골절기, 믹서 등), 도마, 운반기구 등은 작업완료 후 고기 찌꺼기 등을 완전히 세척하여 소독 후 제 위치에 정리한다.

## 작업 중 위생관리

- 작업 중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영업장 밖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출입 시는 앞치마와 장갑은 영업장의 지정된 장소에 걸어 두어야 한다.
- 작업장 바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, 작업 중 발생하는 부스러기, 지방,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시로 청소하여 바닥오염을 줄여야 한다.



# 02 도축장 영업자 준수사항



- 도축장의 계류시설·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지 않는다.
- 검사관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한다.
- 허가받은 가축 외의 동물을 도살·처리하지 않는다.
-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·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, 개인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다.
- 검사관·검사원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으로 출입시키지 않는다.
-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, 교육결과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한다.
-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'폐기용'으로 표시한 후, 냉장·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한다.
- 작업장 출입구 등에는 에어커튼 등 방충시설을 설치하고, 쥐나 해충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